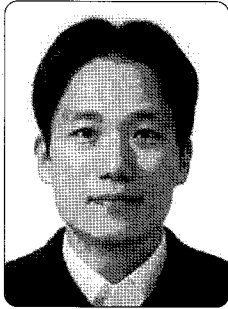


IPO, 세계의 IP를 이끄는 핵심 전력



이 태 원 주임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1. 들어가며

IPO의 Annual Meeting에서 다루어진 주제들 중에는 Bilski 사건을 통해 강화된 BM특허의 구성요건에 관한 쟁점이라든지,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인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약칭)이 새롭게 도입하는 gTLDs와 관련된 브랜드 문제 등의 IP 전반의 현안에 대해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Quanta Computer와 LG전자 간의 분쟁과 Trademark Law in Asia라는 주제로 한중일의 상표법에 대한 논의 등도 진행이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측면에서의 위상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당사자국이 빠진 미국 기업 간의 논의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시장상황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도 갖게 된다.

IPO 이사회의 일원이었던 IBM의 David Kappos가 USPTO에 진출함으로써, IPO는 그 위상과 무게감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이 기업의 공통된 정책의

견을 모아 미국 특허청에 제안하고, 각국의 정부기관을 압박하는 현실에서, IPO에 몸을 담았던 기업출신의 새로운 Kappos 청장이 행정관료 출신의 청장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 것은 굳이 짐작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을 일이다.

예정에 없던 David Kappos의 기초연설에서, 미국 특허청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한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등 적체된 특허심사에 대하여 특허청이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방안 외에, WIPO와의 협력을 통한 PCT출원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WIPO에 불참을 표명했던 것을 비추어 보면, 미국은 PCT를 가운데 놓고, 'WIPO VS. 미국'의 구도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개발도상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가 간 IP 협력체인 WIPO가 미국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는 IPO라는 미국의 IP 민간조직과의 협력을 약속해야 하는 구도가 된 것이다.

2. IPO의 개요

IPO는 1972년에 설립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 소유자 간의 연합체로서, 현재는 250여 개 기

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인 회원을 유치하고 있어, 전체회원은 기업을 포함해 11,000명에 이르고 있다. IPO는 특정산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분야를 섭렵하는 미국 내 유일의 IP 민간 협의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50개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들의 주요 활동 목적은 특허행정과 입법에 대한 정책의견 제안, 국제관계, IP 현안 분석, 정보 및 교육 서비스, 일반인 대상의 IP 인식제고에 두고 있다. 이러한 활동목적은 각각이 대략 30~50개 회원으로 이루어진 29개의 상설위원회로의 위임과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달성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점은 IPO가 특허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특허청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최소 100억 달러의 연매출을 달성하는 기업만이 IPO의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IPO가 미치는 영향력은 곧 입법상의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Proctor & Gamble (우리에겐 P&G로 더 익숙한)의 법무/특허부문 부사장인 Steven Miller를 위시하여, David Kappos를 배출한 IBM, Coca-Cola, Motorola, 휴렛패커드, Microsoft, AT&T, 3M, Intel, GE, Dupont, Google, Adobe, 화이자 등등의 소위 '애들도 아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사회회의의 멤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의 경쟁자이자 발전 모델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IPO이고, 이들이 해마다 미국 전역을 순차적으로 돌며 Annual Meeting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IPO의 외부적인 활동을 대표하는 2009 IPO Annual Meeting의 참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3. 프로그램과 내용

1일차 환영 리셉션

미국 기업인들의 부지런함은 IPO Annual Meeting의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 있다. 통상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되는 매일의 일정은 9월 13일(일)에서 15일(화)까지 이어졌다. 이 3일간의 일정에서 첫날은 IPO의 이사회 간 회합과 위원회 간 회합, 그리고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영연(Welcome Reception)이 펼쳐진다. Welcome Reception의 전후해서 IPO의 이사회 회의와 만찬이 개최되는데, 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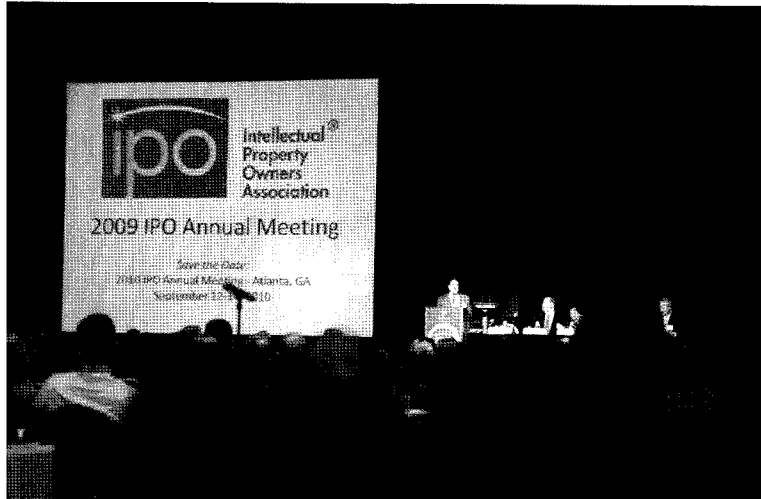


일반 참석자들은 이사회 회합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장장 4시간에 걸친 회의와 저녁시간에 한차례 더 이루어지는 2시간의 저녁 만찬은 IPO 이사회의 핵심적인 정책이 확인되고, 확정되는 자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 앞서 들었던 기업명만 봐도, 전 세계 기업들이 마라톤을 한다면 선두 그룹에서 달릴 회사의 임원급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기도 하니, 쉽사리 외부사람들에게 문을 열 것 같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기업의 특허파트의 수장이 임원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 기업과 아직 CEO들의 특허에 대한 마인드가 성숙해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현실과의 괴리가 크게 와 닿는 측면이다.

미국의 문화답게 리셉션은 교류의 장이고,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통상 일반이 먼저 제안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본적인 교류기반으로서 인사를 나누고, 향후의 접촉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IPO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KINPA(한국지식재산협회)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 IPO의 29개 위원회 중 아시아 지역의 IP 정보와 교류를 담당하는 Asian Practice Committee와의 최초의 공식적인 만남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2~3일차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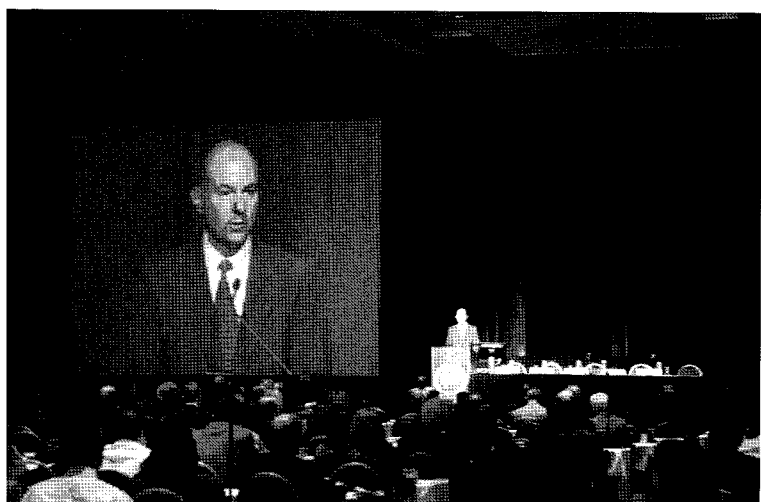
IPO의 Steven Miller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애초 일정표에는 없었던 David Kappos 신임청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특허출원의 심사지연의 문제가 미국 특허청의 가장 큰 과제의 하나임을 반영한 때문인지, 특허심사하이웨이와 세계수준의 PCT 시스템 확보가 주요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penny wise한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표현과 함께, 기업인 특히, IBM의 속도를 특허행정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후의 세미나는 특허와 상표의 두 개의 큰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각각의 주제 내용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특허분야에서는 경기침체상황에서의 IP 포트폴리오의 수립전략, 다양한 특허분쟁 사례에서의 손해 산정방식, 재심 과정과 재심에 따른 전략과 대응방안, Seagate 사건 이후의 특허소송의 판도변화와 대응, 이번 행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Bilski 판결 이후의 BM 특허에 대한 요건 판단의 강화, 특허분쟁의 관할 등 법원 관련 사항, 끝으로 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가 주제로 다루어졌다.

상표분야의 주제로는, social networking과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새로운 마케팅과 광고수단의 등장으로 인한 상표이슈들과 ICANN이 새롭게 선보이는 도메인 네임들과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cybersquatter의 문제, 아시아에서의 특히 중국에서의 상표권 문제, 기타 상표관련 이익충돌과 윤리적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Fair Use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과 역시 Fair Use와 관계가 있는 Staple article에 대해 학제적 측면에서(UCLA Law Review)다루어져,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상기한 각각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방식은 각 주제별로 진행자가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3~4명의 패널들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사안에 따라서는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언급되기도 하고, 실제 업무와 기업 내의 IP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노하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

특히, 월요일 오후에 6개 위원회의 테마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IPO의 29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가 IP 현안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이 주제 중에는 Quanta Computer와 LG전자 간의 침해사건을 통해, 특허의 소진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졌는데, 여타의 주제보다 인기가 높았던 주제였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기존의 특허소진의 범위를 한층 폭넓게 인정하여, 권리자의 특허권 행사의 깊은 주의를 요하는 영향력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발표된 주제들을 대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Corporate IP Management Committee가 IPO의 기업경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Discovery Committee에서는 IPO가 고려하고 있는 특허관련 모범규정(Model Rule)에 대하여 발표했고, IP Licensing Committee는 앞서 언급한 Quanta와 LG전자의 사건이 가져온 특허소송의 경향변화를, Patent Office Practice Committee에서는 최종거절결정 이후의 전략에 관한 노하우를 논의하였고, Trade Secret & Litigation Committee에서는 소송의 대비를 위한 클린룸의 활용과 독자개발의 증명활동을, Trademark Office Practice Committee는 경기침체의 경제상황에서의 상표의 가치평가와 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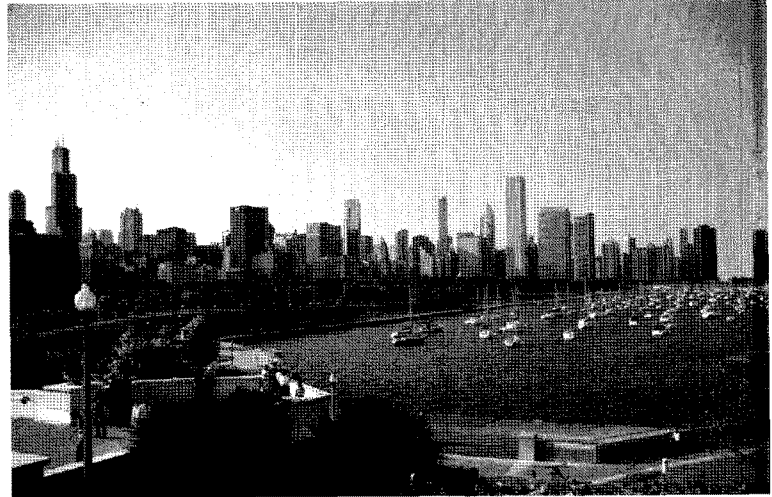
무엇보다, 각각의 주제들은 해당분야의 실무자와 담당자들이 대체로 잘 인지하고 충분한 개인별 사전학습이 이

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제발표의 과정에서 굳이 개요적인 사항을 이야기 하는 데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실무현장에서의 활용과 전략이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전세계의 주요 첨단 IP기술들에 관한 논쟁이 다투어지고, 미국 법원은 그 판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미국 기업의 특허담당자들로 하여금 심층적인 학습과 예리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구조적으로 이미 미국은 IP에 대한 선도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IPO Annual Meeting 전반에 이루어지는 세미나 이외에도, 중간 점심식사 시간에는 IP 관련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마련된다. 이 시간에 역시, 연사와 청중 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튿날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Dyk 판사의 연설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불문법의 전통을 가진 미국은 법원의 판단이 곧 실무의 준거가 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연방법원 판사의 생각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Dyk 판사는 분쟁의 해소에 대한 매우 유연한 사고방식을 표명했다. 분쟁의 해소는 법원의 최종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도, 돈을 주고 상대방의 기술을 구매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하는 것도 결국은 분쟁의 해소라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지만, 그 말의 속뜻은 법원은 무엇보다 분쟁의 해소에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특히 IP관련 분쟁은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배울 것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4. 맺음말

미국 IPO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떼지 못한 우리나라의 KINPA는 차치하고라도, 경제대국 일본의 오랜 역사를 가진 JIPA와 비교해도, 보다 공동체(community) 의식이 강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학습과 활동이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IP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만든다는 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인상이었다. 물론, 어느 사회나 완벽할 수는 없다. 어느 사회나 약점이 있고, 붕괴되기 쉬운 결속 상의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IPO가 갖는 전세계 IP분야의 조류에 대한 영향력이다.



내가 가진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알려주면, 상대가 역이용해서 나에게 도전할 무기를 만들지 모른다는 식의 생각이 자사의 기술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국부의 원천이 되는 기술을 지켜내는 기본적인 보안의식을 만들어 주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IPO 내에서도 그러한 보안에 가까운 기술들은 공개되는 것을 역시 꺼리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지식의 공유와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IPO는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무조건 감싸 안고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교류를 위한 지식으로 재가공하여 서로에게 정보로서의 이익과 때로는 도전의식을 주는 감탄할만한 아이디어로서 제안하고, 토론하는 문화에는 시기심어린 부러움을 품게 한다.

IPO는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량조직이라는 점 외에도, 미국의 IP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WIPO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이려니와, 이들이 미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도 적지 않은 힘을 행사하고 있다. IPO 사무국의 담당자가 건네 준 Congressional Directory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락처를 비롯해서, 행정각부 자료들의 얼굴과 두 줄 정도의 짙막한 약력, 그리고 역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들이 과연 실제로 연락도 하지 않을 주소록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IPO가 미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새삼 다루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발명특허 2009. 10